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설명서(연말정산대상자)

2024. 1.

일러두기

- 본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설명서』는 2023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및 2024년 중도정산에 활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2023년 1, 2월 나이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전국 교육청, 산하기관 및 11,000여개 각급 학교의 74만 교직원의 급여 업무 처리에 활용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이후 1월 22일(예정)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도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작업 기능은 현재도 가능)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사용자설명서]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계속 갱신됩니다.
- 연말정산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로 등록 해주시거나,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요	1
1.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1
2.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6
II.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17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17
2.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18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20
III. 참고사항	38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38
2. 서식 변경사항.....	45
3.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52

I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1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input type="checkbox"/>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만원 ~ 4,6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6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400만원 ~ 5,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5,0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신 설>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input type="radio"/> 연금저축 +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input type="radio"/> 연금저축 + 퇴직연금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000만원)</td> <td rowspan="2">700만원 (400만원)</td> <td>9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1.2억원 이하 (1억원)</td> <td>(60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 (1억원)</td> <td colspan="2">700만원 (3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600만원*)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12%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율</th> </tr> <tr> <th colspan="2">900만원 (600만원)</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td> <td colspan="2"></td> <td>1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 <td colspan="2"></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900만원 (600만원)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600만원*)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12%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900만원 (600만원)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022.12.31.까지 적용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한도 <input type="radio"/>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input type="radio"/>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추 가>			- 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input type="radio"/>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중신수령) 4% <input type="radio"/>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연령 조정 <input type="radio"/>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좌 등) </div> <input type="checkbox"/>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A+B)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①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② 규약 등에 따라 ①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②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9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input type="radio"/>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input type="radio"/>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input type="radio"/>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input type="radio"/>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좌 동) <삭 제>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input type="radio"/>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input type="radio"/>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input type="radio"/> 국가, 지자체 등 <input type="radio"/>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input type="radio"/>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input type="radio"/>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input type="radio"/> (좌 동) </div> <input type="radio"/>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적용시기> 2023.1.1.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취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input type="checkbox"/>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5년간 5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20px;">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80px; margin-right: 10px;"></div>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10년간 50% <input type="checkbox"/> 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1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70%(청년은 90%)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확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20px;">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height: 80px; margin-right: 10px;"></div>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취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input type="radio"/>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750만원 <input type="radio"/>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input type="radio"/>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누계액 <input type="radio"/>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개정취지> 특례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p> <p style="margin-left: 20px;">*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p> <p><input type="radio"/>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p> <p><input type="radio"/> (요건)</p> <p style="margin-left: 20px;">①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p> <p style="margin-left: 20px;">②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p> <p><input type="radio"/> (특례배제* 사유)</p> <p style="margin-left: 20px;">*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p> <p style="margin-left: 20px;">-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p> <p style="margin-left: 20px;">-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p> <p><input type="radio"/>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③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p> <p style="margin-left: 40px;">※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p>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8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이유>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9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display: inline-block;">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2025.12.31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8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th> <th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추가 공제 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p>□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40%)</td> </tr> <tr> <td>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50%)</td> </tr> <tr> <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80%)</td> </tr> </tbody> </table> <p>* (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1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p>□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12.31. 	<p>□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p>-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2.3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고문료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 면제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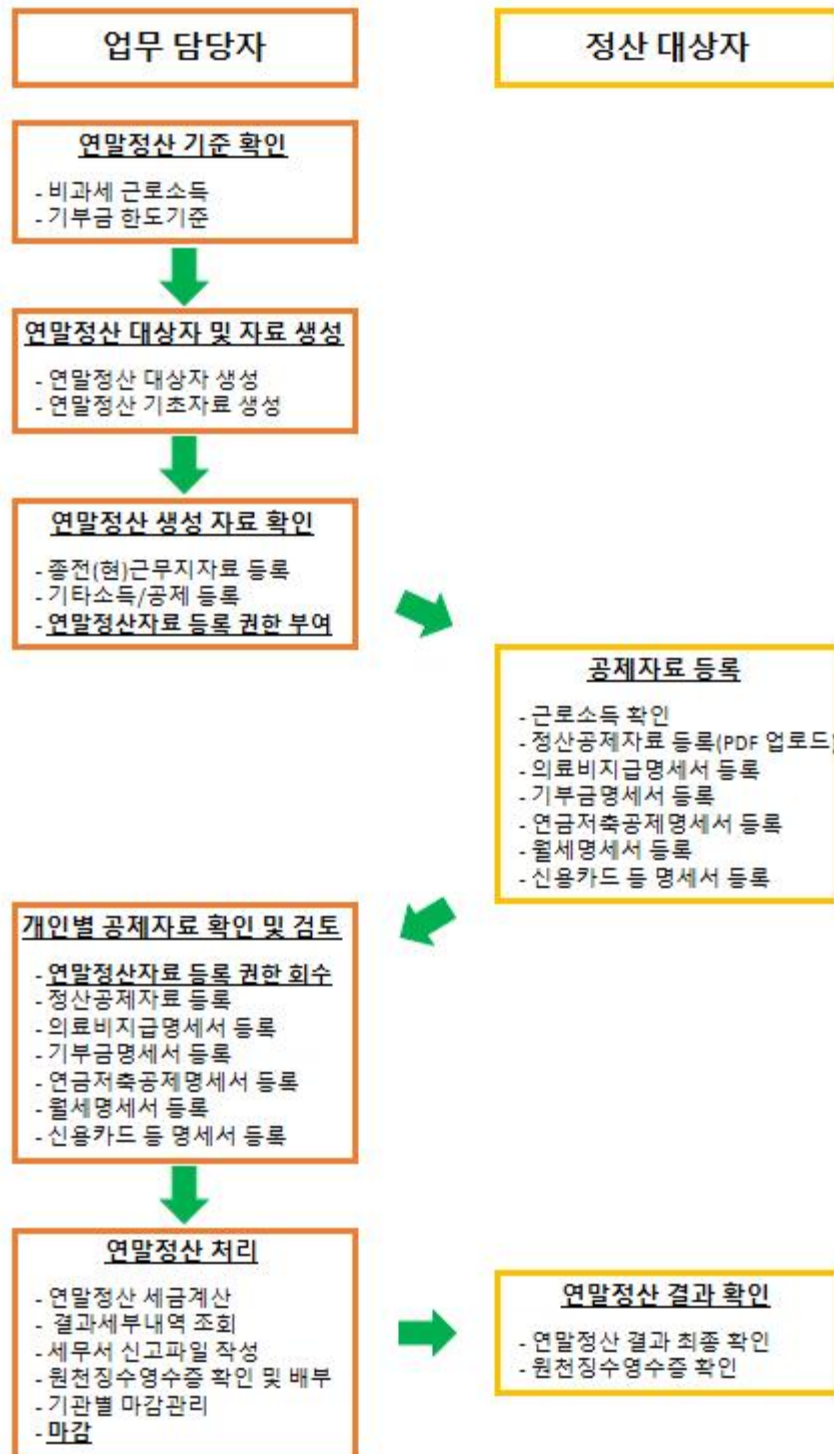
2 2023년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내용	예시	비고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41,000,000	자동산정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월20만원 이내,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연장근로, 식비(월 20만원 이하),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 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 1,00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신용카드공제 적용 시 활용	40,000,000	자동산정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1,25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 한도 적용 기준	28,750,000	자동산정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50, 추가공제(경로100, 장애인200, 부녀자50, 한부모100)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공적), 주택자금(원리금,이자),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자임금삭감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4,750,000	※ 나이스 등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000,000	자동산정																											
(X) 기본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 구간</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의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15%</td> <td>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8%</td> <td>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40%</td> <td>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2%</td> <td>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2,520,000	자동산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520,000	자동산정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70%(청년 90%)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초과30%(74/66/20 한도) ○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 퇴직연금, 연금저축 12%(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자는 15%)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일반-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15%(100만원 추가 한도) - 의료비(총급여액의3% 초과액) : 일반15%,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 - 교육비 : 15% / 기부금 : 정치자금, 특례, 우리사주, 일반(종교), 일반(종교 외) ○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미신청시) ○ 납세조합공제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95-97년),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 : 17%(55백만원이하), 15%(7천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750만원 한도	1,400,000	※ 나이스 등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120,000	자동산정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1,970,000	자동산정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850,000	자동산정																											

II 2023년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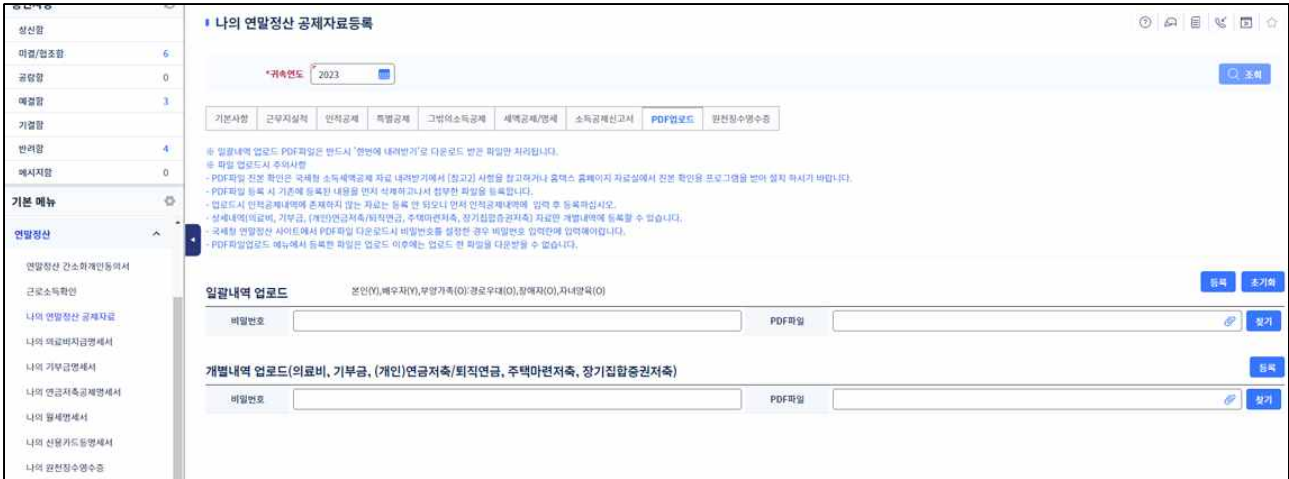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1. 나이스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2. 정산공제자료 등록

1) (개인별)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종이없는 연말정산)



-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PDF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PDF 파일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PDF파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한다.
 - ※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 가능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일괄내역 업로드에 업로드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내역 업로드도 가능하다. 업로드 시 기관 담당자가 의료비 등을 일별로 확인 가능
- 업로드 이후 각각의 탭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한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PDF로 업로드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일괄내역 업로드 PDF 파일은 반드시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은 파일만 처리됨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접속

HomeTax 국세청홈택스

인기검색어 산간소화 3. 소득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My홈택스 전제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

근로자내장장려금 정기 신청	·제도 안내 ·신청확인(취소)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주택 등 기증시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증빙서류 제출 ·소득자료 확인 ·송용차 가액 조회	·신청하기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직접입력 신청 ·계산해보기 ·신청 취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안내 ·신청확인(취소)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주택 등 기증시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증빙서류 제출 ·소득자료 확인 ·송용차 가액 조회	·신청하기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직접입력 신청 ·계산해보기 ·신청 취하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사업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일괄제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편리한연말정산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회사용) 증명서고서 관리	·(회사용)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회사용)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전자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용) 발급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기부금 단체명 찾기	

(납부결제액 조회/납부) 지출내역 조회 일괄 조회 확정신고 부가기록 자료 제공...

전체보기

2. 간소화 자료 조회 접속

3. “한번에 내려받기”로 PDF 다운로드

HomeTax 국세청홈택스

인기검색어 9. 현금영수증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My홈택스 전제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제공동의 현황

귀속년도 2022년 전체월제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번에 내려받기 인쇄하기 첨삭받기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rsonal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월세액 (Monthly Rent)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합동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Long-term Investment Savings/Venture Investmen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장애인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연말정산간소화 도우미

1 적용 월 선택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귀속년도 2020년 전체월제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1,775,777 의료비 (Medical Expense) 공제액 (Tax Credit) 연금 (Pension) 연금 (Pension)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참고1> PDF를 내려받기 할 때 [저장] 또는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 [열기]로 먼저 열람하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위변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참고2> PDF를 열때 **아크로벳리더**를 사용하시고, PDF를 열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참고3> **미검증 표시**
 [원인] 브라우저(크롬 등)로 연 경우, 아크로벳리더 이외 뷰어를 사용한 경우 등
 [해결] 아래의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단, [참고1]의 방법으로 저장한 PDF파일은 미검증으로 보이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가능

<참고4> PDF 파일의 **진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증서 검증 실패**인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진본확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리눅스는 지원하지 않음)
 - 아크로벳리더를 먼저 설치한 후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정상작동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해야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직업훈련비/교복구입비/학자금대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불카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input type="checkbox"/>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div>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input type="checkbox"/> 월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checkbox"/>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	---------------------------------------------------------------------------------------------------------------------------------------------------------------------------------------------------------------------------------------------------------------------------------------------------------------------------

※ 개인정보가 공개된 출력물의 보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피보험자 주민번호와 정치자금기부금 정보는 공개여부 선택과 관계없이 비공개됩니다.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123456-*****)

내려받기

닫기

-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스에서 PDF 업로드 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업로드 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세 PDF파일을 제공하지만, 나이스에서는 1개의 PDF 파일만 업로드하면 처리된다.

3) 전자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 ①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23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기본사항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 **국적** : 본인의 국적을 등록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선택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리스트에서 해당 국가를 찾아 등록한다.
 -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
 - **근무기간** :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23.01.01일이 종료일은 2023.12.31일이 반영된다. 연중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입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기타공제**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공제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비과세총액** :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육아휴직수당) 포함

④ 근무지실적탭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종전현근무지 소득 및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급여총액 : 2018년부터 그밖의비과세(육아휴직수당) 포함

⑤ 인적공제탭에서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⑥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 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⑦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⑧ 인적공제사항에는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항목이 표기된다.

※ 상단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 하단에는 기타 금액을 입력한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한부모, 경로자, 자녀세액, 출산·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이 표기된다.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 PDF에도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만, 나이스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된다.

※ 자녀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환급받고, 자녀장려금 수령 등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인적공제의 자녀세액 체크를 해제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수 있다.

⑨ 특별공제 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 주택자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1년 이전) :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 공제 한도 : 15년 미만(600만원), 15~29년(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기부금이월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이월금에 대하여 입력한다.

※ 이월금이 아닌 2023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 기부금 이월금 등록 방법

- 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리 목적으로 입력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 [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이월금을 등록 후 저장한다. 입력된 내용은 기부금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월금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확인 가능

⑩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 귀속연도 2023

기본사항 근무자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양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21)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인적공제 항목 도서·공연사용분은 0원 처리되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각각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 (E)항목은 인적공제(법) 또는 PDF업로드(법), (F)항목은 연금저축지급내역명세서 입력하십시오.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6,060,000	소기업공제부금		7,500,000		
주택마련저축 (F)	주택청약저축	1,200,000					
	주택청약종합저축	1,800,000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0					
투자조합출자 등 (F)	2021년 출자, 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2022년 출자, 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2023년 출자, 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42,754,489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20,051,117	도서·공연 사용액 (E)		3,262,660		
전통시장 사용액 (E)		687,506	대중교통 이용액 (E)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6,500,000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0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액이 표기된다.
- 소기업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마련저축 : 아래 저축별로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라 납입. 연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에 따라 납입. 월 15만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입력하였지만 소득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투자조합출자 : 거주자/개인에 따라 2018년도 이후 출자·투자분이 표기된다.
 - 10%에 입력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총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 ※ 1,500만원 이하는 100%, 2018년부터는 3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에 표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인적공제에 등록된 금액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조회 됨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적립식 펀드 납입 금액 입력(600만원 한도, 40%공제)

⑪ 세액공제/명세 탭에서는 세액공제 내역을 등록하고, 세액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연금지축(F)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F)
15A 만기시 연금지축 납입액 (F)	
보통저축(F)	3,455,292
보통(장손계좌비제외)	12,808,320
65세이상·장애·장애안호비 (장손계좌비제외)	
기부금(H)	
월세액(G)	
소득세법세액감면(제30조)	
총합	16,755,600

- 연금지축(F) - 연금지축지급내역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이 표기됨
- 연금지축 : 2001.1.1. 이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표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 연금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E) -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나누어 표기됨
- ※ 2018년도부터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입력
- 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고으로 나누어 표기됨
- ※ 교복구입비(공제대상 한도액: 학생1인당 연50만원)
- 기부금(H) - 기부금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월세액(G) : 월세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조특법세액감면(제30조)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액 금액 표기
- 조세조약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조세 조약상 감면급여액 금액 표기
- 소득세법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PDF상 해당 금액 표기

⑫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귀속연도 2023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1 / 4 1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1))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외주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외주자는 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발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외주자는 근로소득자에게 발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원호	주민등록번호	750101-1234567
근로처 명칭	강원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32
세대주 여부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 KR)
면유기간	2023.01.01 ~ 2023.12.31	입원기간	
거주구분	[O]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역	(거주지역 코드 :)
입원공제 항목 병동여부	[] 전일과 동실 [] 병동	불납신정 여부	[] 신정 [] 미신정
합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근로소득자 본인외 합하는 경우 다음 합친징수하는 세액을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원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구분	성명	소득공제 구분	연간 소득액	연간 공제액	연간 과세액	보장료		의료비		교육비		
						연간	과세	보장료	합친징수	의료비	합친징수	의료비
I 특별소득공제	인원공제	1) 본인	2	1	0	0	0	0	0	0	0	0
		합계	2	1	0	0	0	0	0	0	0	0
II 특별소득공제	의료비	1) 본인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⑬ 결과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귀속연도 2023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우리아수기부금 제외)+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작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1 / 4 100%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 < 2024. 3. > < 개정안서식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과세구분	과세구분(과세구분코드)
과세구분	과세구분(과세구분코드)
내국인	내국인(내국인코드)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연간공제액	연간공제액
연간과세액	연간과세액
연간징수세액	연간징수세액
연간과세액	연간과세액
연간징수세액	연간징수세액

1) 본인명 상 호	김원호	2) 과세구분	과세구분
3) 과세구분	221-83-00032	4) 과세구분	559555-*****
5) 과세구분	과세구분	6) 과세구분	과세구분
7) 과세구분	과세구분	8) 과세구분	과세구분
9) 과세구분	과세구분	10) 과세구분	과세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0)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1)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2)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3)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4)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5)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6)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17)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과세구분

4. 기부금명세서 등록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공제대상금액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	국세청지급구분	기부금명식	
	정지자금(국세청지급)	정지자금(20)	1	10,000	5,000	5,000	본인	정지	고갈동	750101-1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사회복지법인 한국합계산	우리사회조립기부	1	210,000	0	210,000	본인	정지	고갈동	750101-1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	법정기부금(10)	1	50,000	0	50,000	직계존속	정지	홍장민	600101-1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메드리온(한미나)	정지자금(20)	2	50,000	1,000	49,000	배우자	정지	홍재용	771231-0001234	그밖의지급	금한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	정장기부금(40)	1	1,200,000	0	1,200,000	직계비속	정지	고갈동	050101-3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혁신공청(고명서방)		1	80,000	0	80,000	본인	정지	고갈동	750101-1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천명분	종교단체기부금(1)	1	26,000	0	26,000	배우자	정지	홍장민	810101-2234567	국세청지급	금한
합계(기부금명세서등록액)				8	1,625,000	5,000	1,620,000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기부금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탭]
-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 4)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 5)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기부금 항목 작성 방법

- 기부금(급여공제 기부금 포함) 관련 항목은 기부금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5. 연금저축공제 등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투자년도	투자구분	가입일자	가입기간월수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2,760,000	0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3,300,000	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신용협동조합		4,200,000	0				
<input type="checkbox"/> 청약저축	(주) 국민은행		1,200,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KEB 하나은행(주)하나은행(주)한국국민		1,200,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주) 대구은행		600,000	0				
<input type="checkbox"/> 장기집합투자증권	(주) 신한은행		6,000,000	0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주) 국민은행		118,698	0	2023	조합2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주) 국민은행		1,000,000	0	2022	조합2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유안타증권(주)중앙종합금융증권		1,200,000	0	2021	조합2		
합계(연금저축공제금액)			22,438,698	0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연금저축의 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연금저축공제 항목 작성 방법

- 근로자퇴직연금, 개인연금, 청약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연금저축 관련 항목은 연금저축공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6. 월세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2018년도부터 월세명세서 항목 작성 방법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임차금 관련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7.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 2)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내역을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선택	소득공제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소화여부	서식	카드사용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명	환산월봉급액	공제대상1월급	공제대상2월급	공제대상3월급	공제대상4월급	공제대상5월급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도서관면동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180,000	50,000	0	0	130,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도서관면동	202-81-48079	HH카드	74,000	-25,000	0	0	99,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대동교동	202-81-48079	HH카드	83,540	83,540	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전동시장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402,000	60,000	0	0	342,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전동시장	202-81-48079	HH카드	78,000	6,000	0	0	72,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일반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4,484,640	0	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신용카드	일반	202-81-48079	HH카드	8,067,017	0	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000-00-00000	현금영수증	100,000	100,000	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Y	현금영수증	도서관면동	000-00-00000	현금영수증	382,610	0	0	0	382,610	0

※ 20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항목 작성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일괄 등록됨
-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한도)-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
- 예)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 주택임차료가 560만원이고 월세명세서에 기등록한 월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월세액 공제한도 750만원 - 기등록 월세액 400만원 = 350만원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350만원을 삭제하고 월세명세서에 350만원을 추가 등록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560만원 - 350만원 = 210만원만 작성 후 저장

4. 기부금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연말정산-자료관리-기부금명세서등록]
- 2) 근로자가 나의업무에서 기부금명세서를 등록한 경우, 그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며 실제 증빙서류와 확인하여 사용한다.
- 3) 나의 업무 및 정산공제자료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기부금총액, 기부금공제금액이 표시되며,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 4) 기부금명세서는 추가 및 수정 버튼으로 내역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부금도 반드시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5) 업무담당자가 여러 명의 기부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반영 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반영한 내역은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8)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는 당년도 기부금 내역과 [정산공제자료등록] - [특별공제탭] 기부금이월금 입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의 경우 세금계산을 완료하면 자동 완성됨

5. 연금저축공제 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연말연월: 2023-12 | 연말정산 | 기관: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직급순

Total 5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지출금액 (합산공제등록금액)	공제금액 (원천징수임수중)
1	감사관	강원호		지방행정주사	15,560,000	4,491,869
2	정책기획과	김경수		장학사	0	0
3	행정국 총무과	지명준		관리관	0	0
4	행정국 총무과	박주사		행정주사	3,000,065	2,100,016
5	행정국 행정과	김지영		지방교육행정주사보	0	0

Total 13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금액	투자년도	투자구분	가입일자	가입기간(월수)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2,760,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3,300,00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신용협동조합		4,200,000				
<input type="checkbox"/> 형의저축	(주) 국민은행		1,200,000				
합계(연금정산등록금액)			22,430,000				

- 1) 메뉴위치 : [연말정산-자료관리-연금저축공제등록]
- 2) 근로자가 나의업무에서 연금저축지급내역을 등록한 경우, 그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며 실제 증빙서류와 확인하여 사용한다.
- 3) 나의 업무 및 정산공제자료에 등록한 연금저축지출금액, 공제금액이 표시되며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 4) 연금저축지급내역 등록 및 수정은 해당 버튼으로 나의 업무에서 등록한 방법대로 작업할 수 있다.
- 5) 개별로 등록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할 수 있다.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지급내역 관련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지급내역 등록 시, 상단에 조회되는 지출금액, 공제금액은 지급 명세서 등록 금액이 아니므로 하단의 지급명세서 합산금액이 더 클 수 있음
- 의료비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인적공제에 등록된 의료비 합산 금액
- 기부금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인적공제에 등록된 기부금 합산 금액
- 연금저축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특별공제, 기타공제에 등록된 연금저축 합산 금액

6. 월세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연말정산-자료관리-월세명세서등록]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월세명세서등록

*정산연월: 2023-12 | *기간: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직급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 한도) - 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Total 5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1	감사관	강원호		지방행정주사	342,400	58,208	522,500,000	4,000,000
2	정책기획과	김경수		장학사	0	0	0	0
3	행정국 총무과	지방훈		관리관	0	0	0	0
4	행정국 총무과	박주사		행정주사	600,000	102,000	0	0
5	행정국 행정과	김지방		지방교육행정주사보	0	0	0	0

월세액 탭: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Total 1

입력 여부	임대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m ²)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임대인 계약기간	월세액	공제금액	
						시작일	종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정순		오피스텔	43	세종시 가흥로	2023-07-01	2023-12-31	600,000	102,000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월세명세서등록

*정산연월: 2023-12 | *기간: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직급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 한도) - 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Total 5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1	감사관	강원호		지방행정주사	342,400	58,208	522,500,000	4,000,000
2	정책기획과	김경수		장학사	0	0	0	0
3	행정국 총무과	지방훈		관리관	0	0	0	0
4	행정국 총무과	박주사		행정주사	600,000	102,000	0	0
5	행정국 행정과	김지방		지방교육행정주사보	0	0	0	0

월세액 탭: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Total 2

입력 여부	대주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자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시작일	종료일	계	원리금	이자	
<input type="checkbox"/>					0.00	0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물주	111111-1111111	2023-01-01	2023-12-31	4.50	522,500,000	500,000,000	22,500,000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7. 신용카드등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연말정산-자료관리-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대상자를 선택하면 아래 탭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명세서등록

연말정산 > 자료관리 >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정산연월 2023-12 *연말정산 *기관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직급순

※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카드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한도) - 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Total 5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일반	도서공연 등 (1-3월)	도서공연 등 (4-12월)	전통시장 (1-3월)	전통시장 (4-12월)	대중교통	일반	도서공연 등 (1-3월)	도서공연 등 (4-12월)	전통시장 (1-3월)
1	감사관	강원호	750101-1234567	지방행정주사	23,042,784	173,100	528,550	141,510	721,520	623,120	14,721,045	3,262,660	11,208,360	31
2	정책기획과	김경수	631108-1012342	장학사	0	0	0	0	0	0	0	0	0	0
3	행정국 총무과	지방준	800309-1234567	관리관	0	0	0	0	0	0	0	0	0	0
4	행정국 총무과	박주사	750923-1401111	행정주사	0	0	0	0	0	0	0	0	0	0
5	행정국 행정과	김지방	770707-1231231	지방교육행정주사보	0	0	0	0	0	0	0	0	0	0

Total 52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도서공연등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180,000	50,000	0	0	130,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도서공연등	202-81-48079	HH카드	74,000	-25,000	0	0	99,00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50101-1234567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대중교통	202-81-48079	HH카드	83,540	83,540	0	0	0	0

※ 20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항목 작성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일괄 등록됨
 -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한도)-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
- 예)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 주택임차료가 560만원이고 월세명세서에 기등록한 월세액이 400만원일 경우
 월세액 공제한도 750만원 - 기등록 월세액 400만원 = 350만원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350만원을 삭제하고 월세명세서에 350만원을 추가 등록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560만원 - 350만원 = 210만원만 작성 후 저장

Ⅲ 참고사항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지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 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80%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직불·선불카드</td> <td>30%</td> </tr> <tr> <td>③ 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 <td>30% (40%)</td> </tr> <tr> <td>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 <td>40% (50%)</td> </tr> <tr> <td>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80%</td> </tr> </tbody> </table>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나이 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 액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80%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8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4년 이하이면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인 적립식 저축을 '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p>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p> <p>-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p>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p>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p> <p>연 200만원 한도</p>	<p>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17.1.1. 이후) ~ '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p> <p>* 청년 감면율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td> </tr> <tr> <td>고령자</td> <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td> </tr> <tr> <td>장애인 등</td> <td>「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td> </tr> <tr> <td>경력 단절 여성</td> <td>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산·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td> </tr> </tbody> </table>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경력 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산·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20만원(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1/2]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8세이상)	-	공제대상자녀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 계좌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은 900만원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퇴직연금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천만원 초과		12%	
	과학기술인 공제	과학기술인공제 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추가납입액×10% (300만원 한도)	15%	
		55천만원 초과		12%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세액공제 대상금액, 300 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 천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ISA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20%·3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를 적용										
			㉣ 그 외 부양가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 ≥ 총급여 × 3%인 경우</td> <td>㉠ + ㉡ + ㉢ + min(㉣ - 총급여 × 3%, 700만원)</td> </tr> <tr> <td>나. ㉠ + ㉡ ≥ 총급여 × 3% > ㉢인 경우</td> <td>㉠ + ㉡ + ㉣ - (총급여 × 3% - ㉢)</td> </tr> <tr> <td>다. ㉠ + ㉡ + ㉢ ≥ 총급여 × 3% > ㉣인 경우</td> <td>㉠ + ㉡ - (총급여 × 3% - ㉣)</td> </tr> <tr> <td>라. ㉠ + ㉡ + ㉢ + ㉣ ≥ 총급여 × 3% > ㉣ + ㉢인 경우</td> <td>㉠ - (총급여 × 3% - ㉣ - ㉢ - ㉣)</td> </tr> </tbody> </table>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 × 3%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 × 3% - ㉢)	다. ㉠ + ㉡ + ㉢ ≥ 총급여 × 3% > ㉣인 경우	㉠ + ㉡ - (총급여 × 3% - ㉣)	라. ㉠ + ㉡ + ㉢ + ㉣ ≥ 총급여 × 3% > ㉣ + ㉢인 경우	㉠ - (총급여 × 3% - ㉣ - ㉢ - ㉣)	
		구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 × 3%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 × 3% - ㉢)											
다. ㉠ + ㉡ + ㉢ ≥ 총급여 × 3% > ㉣인 경우	㉠ + ㉡ - (총급여 × 3% - ㉣)													
라. ㉠ + ㉡ + ㉢ + ㉣ ≥ 총급여 × 3% > ㉣ + ㉢인 경우	㉠ - (총급여 × 3% - ㉣ - ㉢ - ㉣)													
<p>※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p>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생·중·고등학생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대학생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2023년 귀속분부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table border="1"> <tbody> <tr> <td>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td> </tr> <tr> <td>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td> </tr> <tr> <td>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td> </tr> </tbody> </table>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p>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p>														
<p>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p>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3% · 3천만원 초과: 23%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5/100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3% · 1천만원 초과: 3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 한도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 일반(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 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월할계산)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 → 이월공제 가능)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 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IV 정 산 명 세	②1 총급여(⑩,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④9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2 근로소득공제		⑤0 산출세액		
	②3 근로소득금액		세 액 감 면		
	기본공제	②4 본 인		⑤1 「소득세법」	
		②5 배 우 자		⑤2 「조세특례제한법」(⑤3 제외)	
		②6 부 양 가 족(명)		⑤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추가공제	②7 경 로 우 대(명)		⑤4 조세조약	
		②8 장 애 인(명)		⑤5 세 액 감 면 계	
		②9 부 녀 자		⑤6 근로소득	
	연금보 험료공제	③1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⑤7 자녀
				공제금액	
				출산·입양자 (명)	
	공 공 보 험 료 공 제	③2 가 공무원연금 나 군인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연 금 계 좌	
			공제금액		
			대상금액		
			공제금액		
			대상금액		
			공제금액		
	보 험 료	③3 가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나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연 금 계 좌	
			공제금액		
			대상금액		
공제금액					
특 별 소 득 공 제	③4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세 액 공 제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5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③5 기부금(이월분)		세 액 공 제			
③6 계					
③7 차 감 소 득 금 액			세 액 공 제		
③8 개인연금저축					
③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그 밖 의 소 득 공 제	④0 주택마 련 저 축 소 득			가 청약저축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④1 투자조합출자 등				
	④2 신용카드등 사용액				
	④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④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세 액 공 제	
④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7 그 밖의 소득공제 계					
④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⑤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세 액 공 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1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보장성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4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가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나 고 향 사 랑 기 부 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다 특 례 기 부 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라 우 리 사 주 조 합 기 부 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마 일 반 기 부 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바 일 반 기 부 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⑥5 계			
		⑥6 표준세액공제			
		⑥7 납세조합공제			
		⑥8 주택차입금			
		⑥9 외국납부			
		⑦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⑦1 세 액 공 제 계			
		⑦2 결 정 세 액(⑤0-⑤5-⑦1)			
		⑧2 실 효 세 율(%) (⑦2/②1) × 100			

(8쪽 중 제3쪽)

⑩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세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 애 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 천성 이상 아	선 난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1-3월	4-12월	1-3월	4-12월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 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 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 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전화페이지→국제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제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 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 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 비과세 및 감면소 득 명세"란의 "⑳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㉑-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 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㉒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 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㉒-1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총(전)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총(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㉑ 총급여"란에는 "㉒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 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㉒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㉓~㉕)"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㉖~㉗)"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 니다).
- "연금액좌(㉘~㉚-1)"란과 "특별세액공제(㉛~㉝)"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10. 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㉔ 주택자금공제(㉗+㉘), 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㉚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㉗+㉘+㉚), ㉛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㉝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㉞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㉟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㊱ 차감소득금액에서 ㊲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㉞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㉟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㊱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㉟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㉔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㉟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㉘-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 12 3 자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㉘-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㉘-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㉘-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㉘-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㉘-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㉘-6	소득령 § 12 14 (취제수당)	○
		H12	㉘-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㉘-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㉘-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적지원금)	○
		H17	㉘-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출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㉘-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㉘-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㉘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무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㉘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무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㉘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㉘-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㉘-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㉘-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㉘-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㉘-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 12 3 저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S01	㉘-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㉘-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U02	㉘-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조특법 § 88의4⑥	Y03	㉘-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㉘-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㉘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㉘-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㉘-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19	T30	㉘-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㉘-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㉘-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㉘-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㉘-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 § 18조의3	T50	㉘-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30	T12	㉘-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㉘-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㉘-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3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7쪽)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금 액
				⑲ 계	㉑ 원금	㉒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3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 나이스 메뉴

- 급여 > 월급여 > 기본사항관리 > 급여기본사항관리 > 세금내역(탭)

□ 산출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해설(국세청 제공)
 -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조

□ 산출 방법

기본사항		근무사항	가족사항	초과근무	개인수당	개인공제	기여금	4대보험	4대보험공제	지급내역								
지급명세	산정내역	급여사항	당월수당	말월수당	당월공제	말월공제	세금내역	일괄내역	보류내역									
※ 기본공제금액은 공제대상가족수 * 150만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 기본공제기 Y인 배우자+부양가족수+20세이하자녀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진표)는 국세청(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otal 7																		
월	예외		지급대상		연소득 환산금액	근로 소득금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결정세액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	맞춤형 원천징수 금액	가공제 소득세	소득세
	여부	소득세	기간	과세금액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공제									
1	N	0	1	3,950,000	47,400,000	35,280,000	1,500,000	3,811,000	2,133,000	27,836,000	15	3,095,400	660,000	202,950	100	202,950	0	202,950
4	N	0	1	3,950,000	47,400,000	35,280,000	1,500,000	3,811,000	2,133,000	27,836,000	15	3,095,400	660,000	202,950	100	202,950	0	202,950
5	N	0	1	0	0	0	1,500,000	3,100,000	135,000	-4,735,000	0	0	0	0	100	0	0	0
7	N	0	1	2,755,000	33,060,000	22,851,000	1,500,000	4,269,400	1,487,700	15,593,900	15	1,259,085	502,725	63,030	100	63,030	0	63,030
8	N	0	1	3,950,000	47,400,000	35,280,000	1,500,000	3,811,000	2,133,000	27,836,000	15	2,915,400	660,000	187,950	100	187,950	0	187,950
10	N	0	1	4,130,000	49,560,000	37,332,000	1,500,000	3,843,400	2,230,200	29,758,400	15	3,203,760	660,000	211,980	100	211,980	0	211,980
11	N	0	1	4,130,000	49,560,000	37,332,000	1,500,000	3,843,400	2,230,200	29,758,400	15	3,203,760	660,000	211,980	80	169,584	0	169,584

1. 예외

- 1) 여부 : 세금예외(탭)에서 수기로 세금을 조정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2) 소득세 : 세금예외(탭)에서 입력한 소득세

2. 지급대상

- 1) 기간 : 세금 계산 기간
 - 2014년 6월부터는 매월 분할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로 표기
- 2) 과세금액 : 월급여 + 기 지급받은 상여의 1/12
 - 상여 지급 이전 월에 대한 과세액은 과세금액 산출에서 제외(연말에 정산)
 - 월급여 : 수당합계에서 비과세금액과 학비수당 제외
 - 상여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급여외수당

<연간 과세금액 산정 예시>

수당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급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정근수당	1,200,000	0	0	0	0	0	1,200,000	0	0	0	0	0
성과상여금	0	0	0	3,600,000 (월말지급)	0	0	0	0	0	0	0	0
명절휴가비	1,800,000 (월말지급)	0	0	0	0	0	0	0	1,800,000 (급여포함)	0	0	0
연가보상비	0	0	0	0	0	0	1,200,000 (급여포함)	0	0	0	0	1,200,000 (월말지급)
급여외수당	1,200,000 (월초지급)	0	0	0	0	0	0	0	0	1,200,000 (월초지급)	0	0
과세금액 (월급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금액 (정근수당)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과세금액 (명절휴가비)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과세금액 (성과상여금)	0	0	0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과세금액 (연가보상비)	0	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과세금액 (급여외수당)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과세금액 합 (2015년 이후)	3,200,000	3,350,000	3,350,000	3,350,000	3,650,000	3,650,000	3,850,000	3,850,000	4,0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3. 연소득환산금액 : 과세금액(2-2) * 12

4. 근로소득금액 : 연소득환산금액(3)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공제 한도 : 2,000만원

5.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공제대상 가족수 * 150만원

- 공제대상 가족수 : [가족사항(탭)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체크한 인원 수 (본인은 무조건 포함)] + (20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2) 특별공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연금공제 : 당월 기여금 * 12

6.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4) - 기본공제(5-1) - 특별공제(5-2) - 연금공제(5-3)

7. 세율 : 과세표준(6) 구간별 세율이 표기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8. 산출세액 : 과세표준(6)에 기본세율(7)을 적용하여 계산

9.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비고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 초과금액 30%	-

총급여액	공제한도	비고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계산 금액과 66만원 중 큰 금액	-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계산 금액과 50만원 중 큰 금액	-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원) × 1/2] 계산 금액과 20만원 중 큰 금액	-

10. 결정세액 : {산출세액(8) - 근로소득세액공제(9)} / 12

※ 원 단위 절사